

조선업재해율 1%진입

가설재 및 주요 지적사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조선업재해예방팀

조심조심
코리아



목 차

- 조선업 재해통계
- 조선업 가설기자재 관련사항
- 조선소 주요지적사항



조선업 재해통계

구분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2011	6,196	167,344	1,820	46	1.08 (2.74)
2010	4,938	177,433	2,122	47	1.20 (2.65)
2009	4,736	171,118	2,413	53	1.41 (3.10)
2008	4,307	134,699	2,375	45	1.76 (3.34)
2007	3,238	132,992	2,065	46	1.55 (3.46)

부산권역 재해현황

구분	재해자수			업무상사고(사망자)			업무상질병(사망자)		
	증감	2011.12	2010.12	증감	2011.12	2010.12	증감	2011.12	2010.12
전국	△302	1,820	2,122	△249	1,511(35)	1,760(42)	△53	309(11)	362(5)
부산본부	△85	235	320	△70	201(5)	271(5)	△15	34(2)	49(1)
경남동부	1	3	2	1	3(0)	2(0)	-	0(0)	0(0)
울산	△1	364	365	4	256(4)	252(6)	△5	108(2)	113(0)
경남	△81	821	902	△69	669(20)	738(17)	△12	152(6)	164(4)
기타지역	△136	397	533	△115	382(6)	497(14)	△21	15(1)	36(0)

산업안전보건법

-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 3.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노동부고시 제2012-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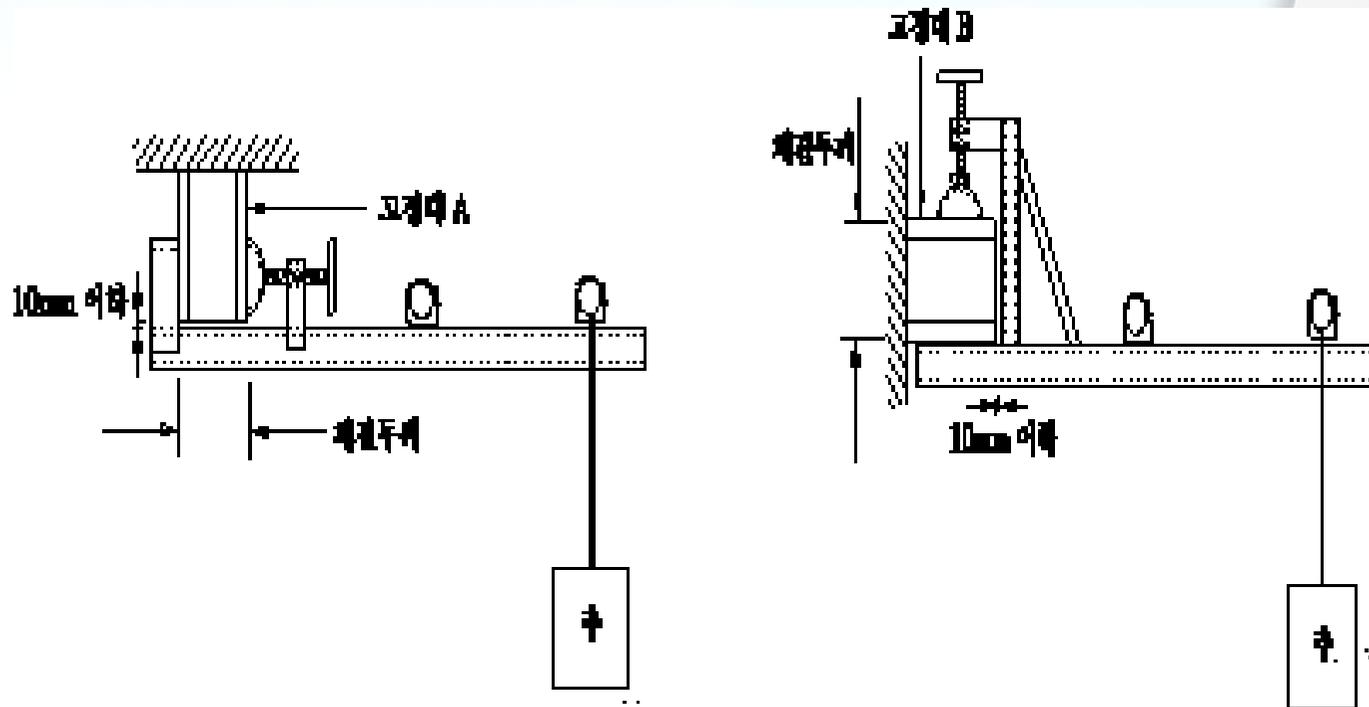
- [별표 1]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1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p>○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p> <p>가. 선반지주</p> <p>나. 단관비계용 강관</p> <p>다. 고정형 받침철물</p> <p>라.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p> <p>마. 방호선반</p> <p>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p> <p>사. 측벽용 브래킷</p>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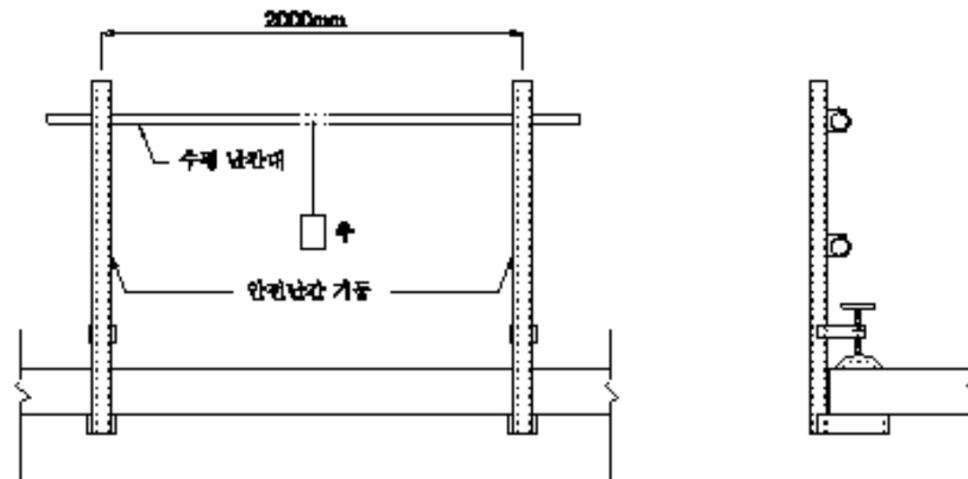
- 상부의 수평 난간대 체결부 위치에 85kg의 추를 매달아 처짐량(100mm이하)을 구하고 160kg의 추를 매달아 파괴유무 조사



안전
조심
필수
확인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

- 난간대 중앙부에 120kg(50mm이하) 추를 매달아 수평 난간대의 처짐량을 구하고, 160kg의 추를 매달아 파괴유무를 조사



조심조심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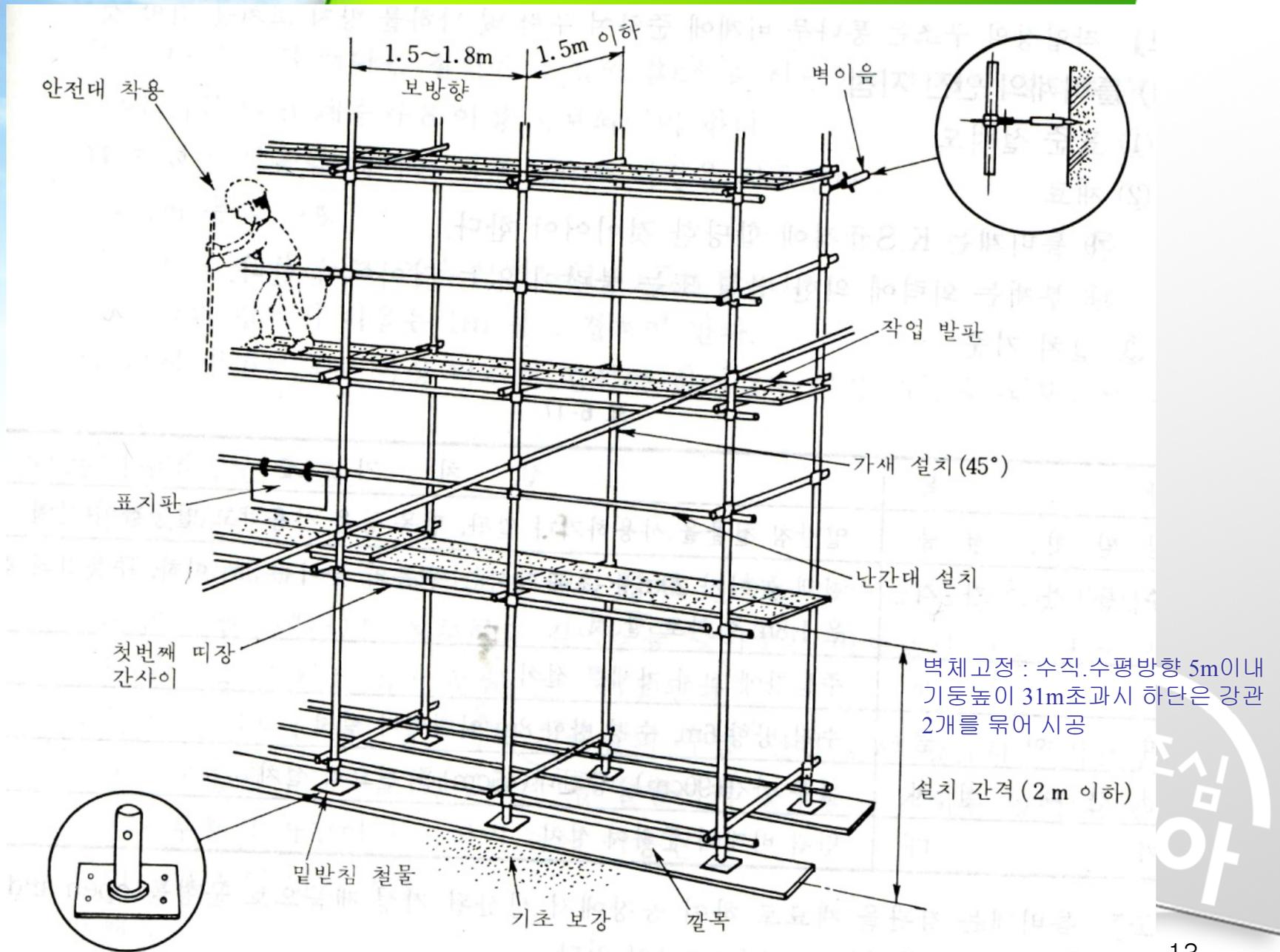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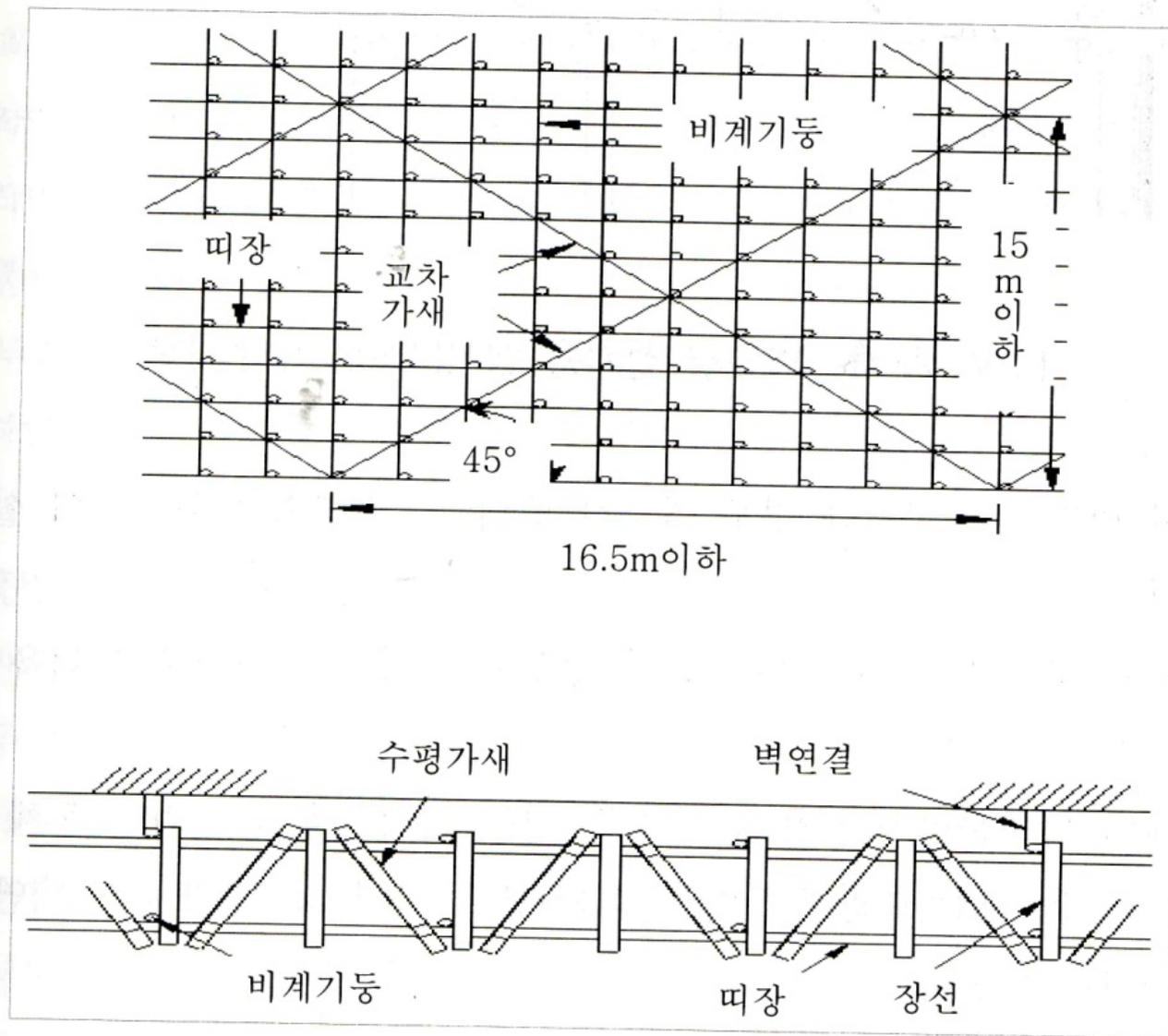






심심
심심
리아





[그림 2-6] 수직 및 수평가새 설치







심심심
리아

안전!!!!

모든 일에 최우선 되는 날까지

